

日本弁護士連合会と大韓弁護士協会の共同宣言

日本弁護士連合会（日弁連）と大韓弁護士協会（大韓弁協）は、2010年6月21日にソウルで開催された共同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日本国による植民地支配下での韓国民に対する人権侵害、特にアジア太平洋戦争時の人権侵害による被害が、日韓両国政府によって十分に回復されないまま放置されていることに対し、両弁護士会が協働してその被害回復に取り組むことの重要性を確認した。

日弁連と大韓弁協は、現実的課題として、先ず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する立法化とその実現に向けた取組が必要であるとの認識を共有するとともに、1965年日韓請求権協定において未解決とされている強制動員による被害を含む諸課題について、法的問題と解決策を検討することとした。

日弁連と大韓弁協は、上記のシンポジウムとその後の検討及び本日東京で開催された共同シンポジウムの成果を踏まえ、アジア太平洋戦争時の韓国民に対する人権侵害による被害の回復を求めて、以下のとおり宣言する。

1 われわれは、韓国併合条約締結から100年を経たにもかかわらず、日韓両国及び両国民が、韓国併合の過程や韓国併合条約の効力についての認識を共有していない状況の下で、過去の歴史的事実の認識の共有に向けた努力を通じて、日韓両国及び両国民の相互理解と相互信頼が深まることが、未来に向けて良好な日韓関係を築くための礎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

2 われわれは、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の立法が、日本政府及び国会により速やかにな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

この立法には、日本軍が直接的あるいは間接的な関与のもとに設置運営した「慰安所」等における女性に対する組織的かつ継続的な性的行為の強制が、当時の国際法・国内法に違反する重大な人権侵害であり、女性に対する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るものであったことを日本国が認め、被害者に対して謝罪し、その責任を明らかにし、被害者の名誉と尊厳回復のための金銭の補償を含む措置を取ること、その事業実施にあたっては、内閣総理大臣及び関係閣僚を含む実施委員会を設置し、被害者及び被害者を代理する者の意見を聴取することなどが含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日本政府は、日本軍「慰安婦」問題を歴史的教訓とするために、徹底した真相究明と、教育・広報のための方策を採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日弁連と大韓弁協は、これらの内容を、「日本軍『慰安婦』問題の最終的解決に関する提言」としてまとめ、共同して公表することとした。

3 われわれ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の完全最終解決条項の内容と範囲に関する両国政府の一貫性がない解釈・対応が、被害者らへの正当な権利救済を妨

げ、被害者の不信感を助長してきたことを確認する。

このような事態を解消するために、日韓基本条約等の締結過程に関する関係文書を完全に公開して認識を共有し、実現可能な解決案の策定をめざすべきであり、韓国政府と同様に、日本政府も自発的に関係文書を全面的に公開すべき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認識に達した。

- 4 韓国においては、強制動員による被害の救済のために、強制動員被害の真相糾明及び支援のための法律が制定されたが、日本政府においても真相究明と謝罪と賠償を目的とした措置をとるべきである。

さらにわれわれは、2007年4月27日に日本の最高裁判所が、強制動員に関わった企業及びその関係者に対し、強制動員の被害者らに対する自発的な補償のための努力を促したことに留意しつつ、既に自発的な努力を行っている企業を評価するとともに、他の企業に対しても同様の努力を行うよう訴える。

この際、想起されるべきは、ドイツにおいて、同様の強制労働被害に関し、ドイツ政府とドイツ企業が共同で「記憶・責任・未来」基金を設立し、被害者の被害回復を図ったことである。韓国では、真相究明委員会が被害者からの被害申告を受け被害事実を審査していることから、同委員会とも連携し、日韓両国政府の共同作業により強制動員被害者の被害回復を進めることも検討すべきである。

- 5 われわれは、戦没者・戦傷者に対する援護制度及び国民年金制度の対象から在日韓国人高齢者を除外している問題や、供託金や郵便貯金の返還問題、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権利、韓国人軍人軍属や強制動員による被害者の遺骨の発掘・収集・返還、韓国文化財の返還等、植民地支配や強制動員に由来する問題が他にも残存しているところ、その解決のために協働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

日弁連と大韓弁協は、被害者らの被害回復が、日本と韓国の未来のために必ず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あり、解決のための日韓相互の努力自体が未来指向的な作業であることをあらためて確認するとともに、今後、既に指摘されている個別的争点を調査・検討するための共同の委員会を設立するなど、持続的な調査研究及び交流を通して、被害者らの被害が回復されるその日まで協働することを宣言する。

2010年12月11日

日本弁護士連合会

会長 宇都宮 健 児

大韓弁護士協会

会長 金 平 祐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공동선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는 2010년 6월 21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공동 심포지엄에서 일본 식민지 지배하 한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특히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인권 침해 피해가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해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양 변호사회가 함께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확인했다.

대한변협과 일변연은 현실적 과제로서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법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강제 동원 피해를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서, 법적 문제와 해결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변협과 일변연은 상기의 심포지엄과 그 후의 검토 및 오늘 도쿄에서 개최된 공동 심포지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의 한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피해의 회복을 요구하고,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한국병합조약 체결로부터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및 양 국민이 한국병합의 과정이나 한국병합조약의 효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 인식의 공유를 향한 노력을 통해 한일 양국 및 양 국민의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가 깊어지게 하는 것이, 양호한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쌓는 주춧돌인 것을 확인한다.

2.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이, 일본 정부 및 국회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다.

이 입법에는, 일본군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설치 운영한 「위안소」 등에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성적 행위의 강제가 당시의 국제법·국내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여성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임을 일본이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금전의 보상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며,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내각총리대신 및 관계 각료를 포함한 실시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리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교육 홍보를 위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변협과 일변연은, 이러한 내용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에 관한 제언」으로서 정리하여 공동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3. 우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완전 최종 해결 조항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양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해석·대응이 피해자들을 위한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불신감을 조장해 왔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일기본조약 등의 체결 과정에 관한 관계 문서를 완전하게 공개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한국 정부와 같이 일본 정부도 자발적으로 관계 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4. 한국에서는 강제 동원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 강제 동원 피해의 진상 규명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일본정부에서도 진상 규명, 사죄와 배상을 목적으로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2007년 4월 27일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강제 동원에 관련된 기업 및 그 관계자에 대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인 보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던 것에 유의하면서, 이미 자발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노력을 실시하도록 호소한다.

이때 상기되어야 하는 것은, 독일에서 강제 노동 피해에 대해,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억·책임·미래」 기금을 설립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로부터의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피해 사실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등 위원회와도 제휴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공동 작업에 의해 강제 동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진행시키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

5. 우리는, 전몰자·전상자에 대한 원호 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에서 재일 한국인 고령자를 제외하고 있는 문제나, 공탁금이나 우편저금의 반환 문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권리, 한국인 군인 군속이나 강제 동원에 의한 피해자의 유골의 발굴과 수집·봉환, 한국 문화재의 반환 등, 식민지 지배나 강제 동원으로 발생한 문제가 그밖에도 잔존해 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대한변협과 일변연은 피해자 등의 피해 회복이, 일본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해결을 위한 한일 상호의 노력 자체가 미래 지향적인 작업인 것을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이미 지적되고 있는 개별적 쟁점을 조사·검토하기 위해 공동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 연구 및 교류를 통하여 피해자 등의 피해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공동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2010년 12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 평 우